

〈일반논문〉

## 1920년대 초 대한민국 임시정부 聯通府 내 경찰 직제에 관한 검토

김 은 지 \*

〈목차〉

- I. 머리말
- II. 聯通府 직제와 경찰 기능 : 警務司·警務科·警監
- III. 警務司長·警監의 임명과 인적 구성
- IV. 맺음말

[국문초록]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제도 마련을 통해 경찰조직을 구성하고자 했다. 그 결과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중국 상하이에 경무국이 설치되었다. 이윽고 임시지방연통제 시행과 함께 국내에서의 지방행정기관 설치가 본격화되었고 국내에서 警務司·警監이라는 직명을 통해 임명되었다. 연통부 직제 내 편성되어 지방행정기관의 청사를 보호하고 국내 요원들을 보호하며 국내활동에 대한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통부 내 경찰 조직은 道 단위에는 독판부 내 경무사를 설치하여 산하에 기밀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과 경호과를 두었고, 府 및 郡 단위에는 부서 또는 군청 내 경무과를 설치하였다. 경찰 기능은 내무부 소관 업무로, 중앙경찰인 경무국처럼 지방경찰인 경무사, 경무과 모두 내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내무총장의 지휘를 받았다. 임시정부 지방경찰관은 警務司長과 警監이라 불렀는데, 대체로 1920년 9-10월경에 집중적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경무사장과 경감이 임시정부 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직원이었기 때문에, 연통부의 구축 시점과 맞물려 임명된 결과이다.

1921년 말부터 1922년에 이르게 되면 연통부는 일제에 의해 거의 파괴되기에 이른다. 임시정부가 초기 구상하고 실행한 지방자치제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고 지방경찰 역시 더 이상 임명되고 활동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부는 보통경찰제를 시행하면서 1부·1군 1경찰서, 1면 1주소소를 원칙으로 전국 경찰기관을 확대하였는데, 임시정부의 지방 경찰 설치 계획 역시 도·부·군 마다 해당 지방행정기관(연통부) 내 편제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비록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웠지만 일제의 국내 행정구역 재편과 지방자치제도의 개편, 보통경찰제를 통한 경찰제도 변화 등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임시정부식 제도를 계획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 주제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지방연통제, 연통부 직제, 경무사장, 경감, 국내 활동

---

## I. 머리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인 1919년 4월 25일 자로 임시정부 직제에 관한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을 제정·공포하였다. 11월에는 「대한민국임시관제」를 공포하여 임시대통령의 직할기관 및 국무원의 직제를

정리하였다. 이처럼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제정한 규정 및 장정은 대체로 직제와 관련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 부처에 관한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하는 것 외에도 對 국내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여 「臨時地方聯通制」, 「道事務分掌規程」, 「府郡處務規程」 등을 공포하였다. 국내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설치할 聯通府에 관한 직제를 법제화 한 것이다.

임시정부는 초창기는 중앙뿐 아니라 국내에 대한 행정적인 장악을 위해 직제를 마련하는데 집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직제는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단체·조직 등의 기구·구성원·직무 분담 등에 관한 제도 또는 법규를 뜻하는 것으로 임시정부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목표에 이르기 위한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행정기관이 운영되고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곳에는 임시정부 경찰 조직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경찰 부서 및 편제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연통부의 역할과 임시정부가 설정한 국내 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엿볼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통제와 연통부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다. 제도사적인 접근과 함께 전국 내 연통부 설치 현황, 각종 활동 사례들이 종합적으로 분석되면서 임시정부 국내활동의 대표 사업으로서 연통제 및 연통부의 전모가 대부분 파악되었다. 임시정부의 지방자치체로서 연통제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연통부에 대한 의미도 부여되었다.<sup>1)</sup> 그러나 연통제에 대한 종합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 임시정부사』 4,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李延馥, 「大韓民國臨時政府의 交通局과 聯通制」, 『韓國史論』 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유진선,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交通局과 聯通制 研究-怡降洋行을 中心으로」, 영남대학교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박민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시행과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上, 국가보훈처, 1999; 박민영, 「도산 안창호와 임시정부 聯通制」, 『도산사상연구』 7, 도산사상연구회, 2001;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김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의 지방자치제 시행과 지방행정관청 운영」,

적인 고찰이다 보니, 직제의 세부적인 분석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경무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임시정부 警察史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일부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연통부 직제 내에서의 위치나 기능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sup>2)</sup>

직제상 부여된 역할은 임시정부가 연통부를 통해 국내에서 추구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부서와 직원이 실제로 직제 내 어떻게 편성되고 활동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수용하면서 보충적인 의미로 연통부 직제 내 경찰 임무를 부여 받은 경찰부서 및 직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통부 내 경무사 및 경무과, 경감이 연통제 직제상 어떻게 편제되어 있으며, 중앙의 경무국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무사장과 경감에 임명된 사람들의 인적 구조와 임명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써 국내 경찰 조직과 함께 연통부의 실제 기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연통부 내 경찰 직제에 대한 검토는 단순하게 ‘행정망’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연통부 본연의 성격을 이해하고 ‘임시정부의 지방자치제도’로서 연통제 시행 의미를 뒷받침해주는 사례 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임시정부의 법령을 분석하였다. 경무사장 및 경감에 임명된 인물들을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가 확보한 연통부 직원 명단과 임시정부 직원록을 활용하였다. 경감에 임명된 경위와 인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 및 신문조서도 검토하였다. 보안이 중요한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실제 활동 사례를 확인해주는 자료가 제한적이었으나, 기존 자료를 면밀

『역사와담론』 91, 호서사학회, 2019.

2) 김광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적 의의 -성립과 활동을 중심으로-」, 『경찰청·한국근현대사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정립방안』, 경찰청·한국근현대사학회, 2018; 황선익,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변천과 역사적 과제」, 『경찰학연구』 19(2),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9.

히 검토하여 그동안 주목하지 못한 부분에 집중해보고자 하였다.

## II. 聯通府 직제와 경찰 기능 : 警務司·警務科·警監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수립 초기부터 국내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으로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임시지방연통제(이하 연통제)의 시행을 들 수 있다. 임시정부는 연통제 시행 목적에 대해 “국민 간에 소통을 하고 復國 사업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에 있는 정부와 국내에 있는 국민 간에 서로 소통하여 활동을 일치시켜 독립을 위한 방법으로써 연통제를 실시한 것이다. 연통제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부터 언급되어, 7월 10일자 「국무원령 제1호」를 거쳐 12월 1일 개정되면서 임시정부식 ‘지방자치제’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개정 연통제를 통해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자 임시정부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편성하여 13개 道로 나누고 하위 행정구역으로 府·郡과 面을 두었다. 각 지역 단위마다 지방행정기관인 聯通府를 설치하고 직원을 임명하였다. 道에 독판부, 府·郡에 각각 府署와 郡廳, 面에는 面所의 명칭으로 청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구역마다 부서를 설치하고 직원을 두어 각각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했다. 연통부 최고 관리자인 독판, 부장, 군감은 내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연통부 직제 상 운영되는 부서 및 직원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制令을 통해 시행한 지방자치제 및 국내 행정구역을 거부하고 임시정부 식으로 재편성하고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만들어 국내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sup>3)</sup>

연통부의 직제는 道와 府·郡 별로 구분되며, 하위 지역 단위일수록 간

소화되었다. 「도사무분장규정」과 「부군처무규정」을 등을 제정하여 소속 직원들의 역할도 부여하였다. 먼저 지역 내 부서의 편성을 살펴보면, 도 단위에는 비서실·내무사·재무사·교통사·경무사를 설치하는데, 내무사에는 서무과·지방과·회계과·심사과를, 재무사에는 세무과·이재과를 두고 경무사에는 기밀과·경호과를 두도록 하였다. 도참사에 임명된 사람이 司長을 맡고 경무사 내 기밀과와 경호과는 경감이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sup>4)</sup> 府와 郡에는 司는 설치되지 않고 서무과·재무과·경무과로 3개의 科만 설치하도록 했다. 각 과의 담당 직원은 부·군의 직원인 장서가 이를 대신하도록 했고, 경무과의 업무는 경감이 수행하도록 하였다.<sup>5)</sup>

연통부에 편성된 부서는 대체로 연통부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부서와 임시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부서, 그리고 문서와 사람이 왕래하는 일 등을 관장하는 교통부서, 일제 경찰 및 적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경찰 부서로 이루어졌다. 임시정부는 연통부 내 재무사의 첫 번째 업무로 국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듯이 인구세를 징수하고 공채를 모집하는 등 재정 마련에 대한 업무 중요도가 높았다. 이외에도 시위운동, 의열투쟁 등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계획한 제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호 기능을 부여한 경무사 및 경무과도 설치하도록 했다. 경찰의 기능이 치안 유지보다는 ‘敵’의 신시설이나 경찰, 제업, 각종 정보에 관한 것과 청사를 경호하는 일 등이 편성된 것이다.<sup>6)</sup>

이처럼 연통부 내 부서 배속에 재정과 경찰 기능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임시정부가 연통부의 설치 목적이 국내에서 자금 마련 및 임시정부 관계자들의 보호 및 임무 완수를 위한 경호적 역할이 강했음을 시사하는

3) 김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의 지방자치제 시행과 지방행정관청 운영」, 114쪽.

4) 「內務部令 制2號：道事務分掌規程」(1919.12.5.).

5) 「內務部令 制3號：府郡處務規程」(1919.12.5.).

6) 「內務部令 制2號：道事務分掌規程」(1919.12.5.).

것이다. 또한 경감의 기능이 편성된 것은 연통부가 행정기관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경우, 정부 행정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경찰 기능이 직제상 편제되지 않았다. 임시정부 국내 비밀결사인 주비단이나 의용단에는 재무장이라는 직책이 존재했거나 '정부의 기관을 보좌하여 재정 기타 사무를 원조'하는 등의 임무<sup>7)</sup>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경찰 업무가 조직 내 편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통부 소속 직원을 살펴보면, 도에는 독판 1인, 참사 4인, 장서 약간인, 경감 2인, 기수 약간인, 통역 약간인을 府·郡에는 부장 또는 군감 1인, 참사 1인, 장서 약간인, 경감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다.<sup>8)</sup> 개정 이전에 道에는 감독 1인, 부감독 1인, 서기 3인, 재무원 2인을, 郡에는 총감 1인, 부총감 1인, 서기 2인, 재무원 1인<sup>9)</sup>에 불과하던 직원이 참사와 경감, 기수, 통역 부분에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사는 도와 부·군에서의 역할이 상이했는데, 도의 참사는 독판부 내 설치될 4개의 부서 즉 司의 총괄자가 되었기에 도 단위에 4명의 참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부·군에는 司의 하위 단위인 科가 설치되어 참사가 副부장 또는 副군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科에는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인 掌書가 배치되었다. 그 외에도 技手는 기술에 종사하며 통역은 通辯 및 번역의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경감은 경찰 및 위생사무에 종사하도록 했다.<sup>10)</sup>

소폭이지만 직제에 변동이 생긴 것은 연통제가 개정되면서 행정구역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고, 각 지역에서 담당할 업무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면서 필요한 직무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연통부

7) 김정명, 『朝鮮獨立運動』I-分冊, 原書房, 1967, 454쪽.

8) 「改定 教令 制2號: 臨時地方聯通制」(1919.12.1).

9) 「國務院令 第2號: 臨時聯通制」(1919.7.10).

10) 「改定 教令 制2號: 臨時地方聯通制」(1919.12.1).

내 부서와 직원에 관한 규정은 각 도에 장관, 참여관, 사무관, 통역관, 기사, 서기, 기수 등을 두도록 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와 유사한 구성이다.<sup>11)</sup>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연통부 내 기수와 통변은 직제상으로만 존재하는 직원일 뿐 실제로 임명된 사례는 자료에 등장하지 않는다. 상하이에서 국내로 사람과 문서를 보내 직원을 임명하는 일은 위험부담이 매우 큰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 중요도 순으로 직원을 섭외하다 보니 기수와 통변 임명에는 이르지 못한 결과이다.

경찰 조직에 관한 것 역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와 차이점이 있다. 임시정부의 경우 지역마다 경무사 및 경무과를 설치하고 警監을 두도록 한 것이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보통경찰제를 시행하면서 1부·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를 원칙으로 전국 경찰기관을 확대하였는데,<sup>12)</sup> 임시정부의 경무사 및 경무과 설치 계획 역시 도·부·군 마다 해당 지방행정기관(연통부) 내 편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비록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웠지만 일제의 국내 행정구역 재편과 지방자치제도의 개편, 보통경찰제를 통한 경찰제도 변화 등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임시정부식으로 제도를 계획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상 확인되는 바에 의하면 道 내 독판이 임명된 곳은 6개 道에 불과하다.<sup>13)</sup> 전국을 13개 도로 나눈 것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임명된 직원 역시 내무사장, 재무사장, 경무사장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도 독판 다음으로 임명 비중이 높은 것은 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경무사장 및 경감이었다. 부·군 내 경감의 임명 현

11) 「조선총독부 칙령 제357호」.

12) 김민철, 「조선총독부 연구: 식민지통치와 경찰」, 『역사비평』 24, 역사비평사, 1994, 204쪽.

13)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조선민족운동연감』 별책2,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2府 215郡 중 부장은 3곳, 군감은 41개 군에만 임명되었다.

〈1920년 12월 연통제 군직원 현황표〉

府·郡	재령	안악	장연	신천	은율	서흥	해주	평양	진남포	대동	용강	선천	의주	정주	영변	태천	구성	운산	창성	벽동	삭주	강계
郡監(府長)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參事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8
掌書												4	3	4			2		4	3	5	
警監												1	1	1			1		1	1	1	1
參議												5	5				5	1	5	5	6	5
府·郡	이원	초산	자성	선천	후창	희천	함흥	영흥	덕원	홍원	정평	신흥	이원	회령	경성	경흥	인천	청주	괴산	단양	제천	충주
郡監(府長)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參事	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掌書		5	2		6	1							2									
警監	1	1	1		1								1						1			
參議	5	6	5		5								5						4			

부군감 또는 부부장에 해당하는 참사는 군감(또는 부장)이 임명된 44개 지역 중 8곳을 제외한 36곳에 임명되었지만, 이하 직원의 임명은 원활하지 않았다. 장서·경감·참의가 모두 임명된 곳은 평안북도 선천·의주·구성·창성·벽동·삭주·초산·자성·후창·이원으로 10개 군에 불과하였다.

함경북도 : 독판, 경감, 장서, 기수  
 함경남도 : 독판, 재무사장, 교통사장, 경무사장, 경감, 장서, 참의  
 황해도 : 독판, 내무사장, 재무사장, 교통사장, 경무사장  
 평안북도 : 독판, 내무사장, 재무사장, 교통사장, 경무사장, 장서  
 평안남도 : 독판, 내무사장, 재무사장  
 충청북도 : 독판, 참사 4인

장서 12곳, 경감 14곳, 참의 14곳에서 임명되었는데, 한두 곳에 불과하지만, 도에 이어 군 소재지에도 경감의 임명이 제일 높은 편이다. 또한 자료 상 장서와 참의에 임명된 대상의 활동이 드러나지 않지만, 유일하게 경감의 활동은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임용된 지방 직원 중 실제로 활동상이 드러나는 대상은 독판 및 부장, 군감과 참사, 경감 정도에 그친다. 관내 행정사무의 지휘권자인 독판, 군감, 참사는 당시 일부 지역에만 연통부를 설치하고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선 제외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임명된 것이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최소한의 임명으로 연통부를 운영해야 했다는 열악한 상황에서 長 급 이하의 직원 임명은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 제외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장서와 경감 위주로 임명 되었고, 장서는 서무과 및 재무과의 담당자로 주로 연통부 내 행정 처리 및 운영에 관한 것과 자금을 관련한 일을 맡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통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임무가 인구세 징수와 독립 공채의 모집 등 재정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1920년 재무부에서 독판에게 자금 모집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면 독판이 자금 모집과 관련된 일들을 대리하고, 국내에서 수합된 자금은 다시 재무부로 보내는 등 주로 진행된 임무가 재무와 관련된 일이었다.<sup>14)</sup>

자금을 모으고 임시정부로 보내지기 위해서는 이와 관계된 사람과 정보에 대한 보안·보호가 수반되어야 했다. 경찰 및 위생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이 직제상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과 행정적인 장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진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경찰 조직이 편제된 것이다.

警監은 警務司 및 警務科의 실무자로서 일제의 정보를 탐색하고 일

14)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76쪽.

제경찰을 정찰하며 연통부 청사를 경호하는 일에 관한 것이 주요한 업무였다. 일제와 직접적인 접촉 또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등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sup>15)</sup> 그렇다면 경감의 신분 및 기능은 정확히 어떤 것이었을까. 이는 같은 내무부 산하에 편제된 경무국의 활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경무국은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며 ① 행정경찰에 관한 사무 ② 고등경찰에 관한 사무 ③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무 ④ 일절 위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sup>16)</sup> 기본적으로 임시정부 ‘중앙 경찰’로서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교민사회의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sup>17)</sup>

중앙의 경무국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대상으로 국내에 경무사 및 경무과를 편제하고 경감을 임명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통부 내 설치되는 것으로써 ‘지방 경찰’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道 내 경무사가 ‘지방 경찰’ 조직으로 구성되고, 府와 郡 내에는 경무과라는 명칭으로 부서 및 군청 내에 편제되었다. 임시지방연통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수장이 내무총장이었기 때문에 경무사 및 경무과의 ‘지방 경찰’에 대한 사무규정 역시 내무총장이 정하였다.<sup>18)</sup> 이는 경무국에 이어 ‘지방 경찰’ 역시 최고 지휘권자가 내무총장으로 경찰조직이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道 내 警務司의 주 역할은 2개의 과로 편제된 기밀과와 경호과의 복무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機密科는 경호원 복무 및 규율에 관한 사항, 범죄 탐색 및 검거, 적의 新施設에 관한 사항, 적의 경찰 및 계엄에 관한 것, 적이 사용하는 유혹방법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적의 동정 정찰에

15)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조선민족운동연감』 별책2, 86~91쪽.

16) 「法律 第2號:大韓民國臨時官制」(1919.11.5.).

17) 김광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적 의의」, 8~9쪽.

18) 「法律 第2號:大韓民國臨時官制」(1919.11.5.).

대한 것이었다. 警護科에서 수행할 업무는 경호구역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인구 기타 조사, 신문잡지 기타 인쇄물에 관한 사항, 집회 결사에 관한 사항, 적의 행위를 보조·협조하는 불령자 조사, 적에 의지하는 재산가 조사에 관한 것이었다.<sup>19)</sup> 요컨대 기밀과는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곳이었다면 경호과는 치안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군에 편성된 경무과에도 경무사의 업무와 유사한 사항이 담당 사무로 지정되었다. 府와 郡의 행정구역에 대한 범죄 탐색 및 검거에 관한 사항, 적의 신시설에 관한 사항, 적의 경찰 및 계엄에 관한 사항, 적의 정보 정찰에 관한 일절의 사항, 적이 사용하는 유혹 방법에 관한 사항, 적의 행위를 보조 협조하는 불량자 조사에 관한 사항, 적에 의지하고자 하는 재산가 査察에 관한 사항, 인구 기타 조사에 관한 사항, 신문잡지 기타 인쇄물에 관한 사항, 집회 및 결사에 관한 사항, 署·廳 경호에 관한 사항이 주요 업무로 지정되었다.<sup>20)</sup>

경감은 해당 관청의 청사를 경호하기 위한 업무도 수반되었다. 그러나 청사 경호에 대한 업무는 실제로 수행할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방 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사람을 모집하고 임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 청사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임시정부 청사가 마련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운영되던 상하이에서는 청사를 경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에 경무국 내 청사 수호에 대한 업무 비중이 높았던 것과 대비된다.

경무과는 대체로 警務司의 기밀과와 경호과의 사무를 합쳐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할 점은 경무사·경무과 업무 모두 정보활동과 관련된

19) 「內務部令 第2號：道事務分掌規程」(1919.12.5).

20) 「內務部令 第3號：府郡處務規程」(1919.12.5).

것이다. '적'을 차단하는 실행에 관한 것이 아닌 '적'의 동정을 살피고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경무 기밀에 관한 것, 범죄 탐색 및 검거에 관한 것, 적의 행동에 관한 것 등 조사하여 수집된 사항은 문서로 편찬하여 청사에 보관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sup>21)</sup>

연통부 내 경찰 조직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임시정부가 지방자치제에 대한 구색을 갖추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국내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대의 주요한 경찰 기능인 치안 유지의 목적이 아닌, 일제의 정보를 탐색하여 위협을 미연에 감지하는 정보적 역할에 경감의 기능이 집중된 것이다. '중앙 경찰' 역할이었던 경무국의 실제 활동이 그러했듯이 독립운동을 진행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임시정부 경감의 역할은 일제의 정탐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가의 투항 및 일제 경찰조직으로부터 정보를 사수하는 일이 주요 임무가 될 수밖에 없었다.<sup>22)</sup>

경감에 임명된 이들은 실제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을까. 극히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로 활동한 내역이 드러나는 최방연·최항신·최석준·김창렬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함경북도 警務司長 최방연은 국내에서의 인구세·임시정부 발행의 독립공채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주로 수행하였다. 또한 간도에 있는 국민회와 연락을 취해 본부로부터 권총과 폭탄 등의 무기를 입수하여 일제 관공서 및 친일 인사 등을 차단하는 임무가 주어졌다.<sup>23)</sup> 이러한 임시정부의 명령은 간도지역 특파원이었던

21) 「內務部令 第3號 : 府郡處務規程」(1919.12.5.).

22) 김광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적 의의」, 8~9쪽.

23) 「高警 第1313號 聯通制 改正組織의 企劃 發見 檢學」, 1921. 2. 7, 『朝鮮騷擾事件 關係書類 共7冊 其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매일신보》 1921년 9월 25일, 〈회령 폭탄범 예심 결과, 일파 20명을 청진지청공판에〉.

안정근을 통해 전달 받았다.

최방연은 먼저 동지들을 모아 崔弼柱, 吳益烈, 李鍾默 등과 함께 회령군 팔을면 일대에서 독립자금 모집을 하였다. 다음으로 권총 4정, 폭탄 14개를 입수하여 회령경찰서, 재판소, 兵營, 헌병분대, 우편국, 은행 및 조선인 부호, 일본인 유력자의 집 등에 투탄하여 이를 파괴하고 회령경찰서에 근무하는 조선인 특무순사를 처단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에 안정근으로부터 공채권과 권총·폭탄을 받기로 하였으나 예정대로 무기가 도착하지 않았고 훈춘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가 급히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 군대가 만주에 출동하면서 재무사장 허익근과 간도지역과 독판부를 연결해주던 국민회 통신부장 박용훈이 피살당하게 되면서 투탄계획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좌절되었다.<sup>24)</sup>

평안북도 초산군 경감에 임명된 최항신은 초산군 일대에서 청년들을 모집하여 단원으로 가입시키는 한편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sup>25)</sup> 평북 삭주군 경감 최석준은 1920년 4월경 관전현에서 광복군총영설치에 협력하고 삭주군 내 지부를 설치하기 위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존재가 발각되어 중국 안동현에 피신해 있던 중 임무를 받고 상하이로 가는 과정에서 피체되어 고문 끝에 사망하였다.<sup>26)</sup>

함경남도 이원군 경감에 임명된 김창렬은 장백현 17도구 지방에 근거를 둔 대한독립군비단에서 활동하며 군자금 모집을 위해 활동하였다.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탐색하여 임시정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탐색할 사항은 ① 이원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 ② 외국의 신문 잡지에 게재된 조선독립의 여론 ③ 1919년 소요 후의 일본정부의 시정방

24) 「高警 第1313號 聯通制 改正組織의 企劃 發見 檢舉」, 1921. 2. 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5) 《동아일보》 1921년 5월 14일, 〈판결사건 일속〉.

26) 《독립신문》 1921년 11월 19일, 〈최석준의 피살〉.

침 ④이원군 지방의 금융사항 ⑤1919년 3.1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의 주소와 이름 ⑥독립운동 동지들의 주소와 이름 ⑦경찰의 배치 정도 ⑧지방 민심이 임시정부에 복종하느냐의 여부 등이었다.<sup>27)</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무사장 및 경감은 주로 국내 활동의 일선에서 직접 투쟁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무분장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긴 어려웠지만 단원을 모집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역할 외에도 군자금 모집이나 投彈 활동 등 임시정부의 각종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시정부 국내 활동의 핵심 지역일수록 경찰조직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경무사장 및 경감은 1920년 중순부터 1921년 초까지 활발하게 임명되고 활동하였다. 연통부는 대체로 1921년 말이 되면 일제의 탄압에 의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지방행정기관 내 소속되어 있었던 경감의 특성 상 연통부의 활동 시기와 맞물려 운영된 결과이다.

### Ⅲ. 警務司長·警監의 임명과 인적 구성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자금모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을 구성하여 투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경감의 역할이 필요했다. 모든 활동에는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따랐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뿐 아니라 연통부 참여자들 및 각종 정보 등을 보호할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다. 경무사장 및 경감의 주요 역할이 적의 新施設, 적의 경찰

27) 「고경 제2863호 불령단원검거」, 1921. 2. 19,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공7책 기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및 계엄, 적이 사용하는 유혹방법 등 ‘적의 동정 정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이러한 일을 수행할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경무사장 및 경감이 임명되었다.

〈연통부 내 경무사장 및 경감 임명 현황〉

道	평안북도 (경무사장) 申彦甲→ 呂淳根
	함경북도 (경무사장) 崔枋薰, (경감) 崔弼柱
	함경남도 (경무사장) 洪基鎭, (경감) 朴源八
	황해도 (경무사장) 金基澁
郡	평안북도 용천군 (경감) 黃正憲, 의주군 (경감) 獨孤瓚, 정주군 (경감) 朴奎徵, 구성군 (경감) 裴鏞浩, 창성군 (경감) 章化潤, 벽동군 (경감) 鄭錫台, 삭주군 (경감) 崔錫俊, 강계군 (경감) 金商燾, 위원군 (경감) 金東遠, 초산군 (경감) 崔恒信, 자성군 (경감) 李宗伯, 후창군 (경감) 金時燦
	함경남도 이원군 (경감) 金昌烈
	충청북도 괴산군 (경감) 金敬模

경무사장 및 경감이 충실히 임명된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통부 설치가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진 곳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평안북도 지역에서의 경감 임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총11개 군 소재지에 경감이 임명된 것이다. 평안북도는 21개 군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17개 군에 연통부 조직이 설치되어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임시정부 활동이 미친 곳이다. 연통부 조직이 설치된 17개 군 중에 총11개 군에 경감이 임명된 것이다. 함경남도 이원군, 함경북도 회령군, 충청북도 괴산군에 각각 1명의 경감만 임명된 것에 대비되는 결과이다.

지방 경찰 조직이 道-郡 단위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지역은 평안북도였다. 평안북도 독판부는 중국 관전현에 설치되어 그 지역에 활동하는 대한독립단과 대한청년단연합회와의 연계 속에서 확장해나갔다. 지역 내 유력한 독립운동 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평안북



도 독판부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독립운동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정도로 잘 유지되었다.<sup>28)</sup> 그렇기 때문에 평안북도 독판부가 타 지역의 독판부에 비해 운영이 잘 되었던 것이고, 경무사장 및 군 단위의 경감들의 임명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평안북도 독판부의 경무사장은 1920년 1월 12일 申彦甲(일명 申基甲)이 임명되어 9월 21일까지 재임하였다.<sup>29)</sup> 신언갑은 경무사장에 임명되던 시기와 맞물려서 1920년 2월 전후로 광복군 참리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참리부는 지방에서 분파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여 통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임시정부 내무부 직속 하에 설치되어 남만·북만주 교민 통치에 이용되었다. 참리부가 임시정부 평안북도 독판부와 긴밀한 연락을 통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학무부장에 임명되었던 신언갑이 독판부의 경무사장을 겸임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0)</sup>

신언갑 후임으로 1920년 9월 21일자로 여순근이 임명되었다. 여순근의 임명은 평안북도 독판부가 임시정부 국내활동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지방경찰 중 유일하게 중앙 경찰인 경무국 소속 직원이었던 여순근을 평안북도 경무사로 임명된 것이다. 그는 1920년 2월말 임시정부 경무국의 경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sup>31)</sup> 경무부장은 경무국장 바로 아래 직급으로 경무국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여순근은 임시정부 군무부 직할 기관이었던 광복군사령부의 부관을 역임하였으며<sup>32)</sup> 평안북도 독판부 경무사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대한청년단원

28) 《독립신문》 1920년 5월 15일, 〈地方通信〉.

29)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 조선민족운동연감』 별책2, 83쪽.

3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5, 264~267쪽.

31) 「高警 第13706號 國外情況 : 上海在住不逞鮮人の狀況」, 1921. 4. 29,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共7冊 其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5, 267~268쪽.

합회 경호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sup>33)</sup>

이처럼 ‘중앙 경찰’로 활동하던 여순근을 평안북도 경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임시정부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평안북도 지역은 임시정부 국내활동에 있어서 교통·행정 등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무사장에 경무국 경무부장을 역임했던 인물을 임명한 것이다. 여순근의 경무부장 이력 외에 소속되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임시정부 교통망 역할을 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는 핵심 지역인 평안북도의 경무사장으로 지목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었을 것이다. 자료상 마지막으로 유지된 곳은 평안북도 경찰기관이었고, 마지막에 임명된 이는 여순근이었다. 이것은 평안북도가 임시정부 대국내 활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직이 조직될 수 있는 최후의 기간까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郡 단위 지역의 경감 임명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 역시 평안북도 지역이 유일하였다. 평안북도는 총 21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임시정부의 군청이 설치된 곳은 17개 군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군청 내 경감이 임명된 곳은 용천군, 의주군, 정주군, 구성군, 창성군, 벽동군, 삭주군, 강계군, 위원군, 초산군, 자성군, 후창군으로 각각 경감 1인씩 임면되어 총 11명의 경감이 배치되었다. 이는 함경남도와 충청북도에는 각각 1개 군에만 경감이 임명된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 중 임명 일자가 명확한 대상만 언급해보면, 용천군 경감 황정현, 벽동군 경감 정석태, 위원군 경감 김동원은 모두 1920년 5월 1일자로 임명되었다. 삭주군 경감 최석준은 같은 해 5월 14일에 선임되었고, 강계군 경감 김상돈은 8월 1일자로 임명되었다. 대체로 임시정부의 연통제가 가장

33) 《독립신문》 1920년 5월 15일, <대한청년단연합회총회>; 「안병찬 등 체포에 관한 건」, 1920. 5. 24, 『불령단관계잡건-조선인의 부-재만주의 부 17』,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활발하던 1920년대 초중반에 경감들이 대거 임명된 것이다. 이들 중 삭주군 경감 최석준은 경감을 역임하기 전부터 관전현에서 광복군총영에 참여하는 등 임시정부 국내활동에 관계되어 있었다.<sup>34)</sup> 그의 친형 崔錫淳 또한 일제 형사로 신분을 위장하고 안동현에 거주하며 임시정부의 연락업무를 담당하던 인물이었다.<sup>35)</sup>

평북 지역이 연통부 운영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다면, 함경북도도 연통제가 가장 먼저 시행된 지역이다. 1919년 9월 경 임시정부 특파원인 명제세가 「임시연통제」 규칙을 함경북도 會寧郡에 있는 교회로 보내면서 연통부 설치를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sup>36)</sup> 회령지역에 독판부가 설치되면서 직원 임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함경북도 경무사장 및 경감이 임명되어 督辦 吳重默, 통신사장 오순준, 재무사장 허익근, 경무사장 崔枋衍(崔枋勳, 당35세) 경감 崔弼柱(당 27세)가 선임되었다.<sup>37)</sup>

이들이 함경북도 독판부 직원에 임명된 경위는, 임시정부의 간도 방면 특파원이었던 안정근의 권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임시정부는 간도 지역의 유력단체인 국민회 의군단·광복단·군정서 등과 연계하여 함북 회령지역에 독판부를 설치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때 함경북도 회령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팔을면 창효동 567번지 鄭熙鎔과 금생면 133번지에 거주하는 崔枋德의 집에 모여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간도 방면과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sup>38)</sup> 이들이 독립운동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앞선 국내

34) 《독립신문》 1921년 11월 19일, 〈최석준의 피살〉.

35) 정정화, 『장강일기』, 62~64쪽.

36) 경성복심법원, 「박원혁 외 36인 판결문」, 1920.11.29.; 『매일신보』 1921년 1월 17일자, 〈외적운동에 실패한 대음모단 신연통제사건대폭로〉.

37) 「김세협 외 14인 판결문」, 경성복심법원, 1922.2.27.

38) 「高警 第1313號 聯通制 改正組織의 企劃 發見 檢舉」, 1921. 2. 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특파원 명제세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행 중 대표로 오순근이 중국 和龍縣에 있는 국민회 통신부장인 朴用勳과 교섭하면서 안정근과 연계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마침 박용훈은 앞선 함경북도 독판부 설치 문제를 임시정부 특파원 안정근과 협의 중인 상태였다. 이에 안정근의 적극적인 권유로 회령에 함경북도 독판부를 두자는 제의는 즉시 받아들여지면서 임시정부 특파원과 회령 지역의 사람들과 간도의 국민회 간에 순조로운 협의 결과 회령군에 함경북도 독판부가 설치될 수 있었다.<sup>39)</sup> 그 결과 간도 지역의 국민회 일부 단원들과 협의하여 독판부 설치 뿐만 아니라 경무사장 및 경감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일제에 활동 사실이 발각되면서 관계자들이 청진지청 검사에 송치되었고 함경북도독판부 및 함경북도 경찰 조직은 와해되고 말았다.<sup>40)</sup>

함경남도 독판부는 1919년 12월 17일로 함흥 지역에 설치되고 독판이 임명되었다.<sup>41)</sup> 독판부가 설치되었으나 바로 경무사장 및 경감의 임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9개월 뒤인 1920년 9월 10일자로 경무사장에 洪基鎭이, 경감에 朴源八(韓鍾聲)이 임명 되었다.<sup>42)</sup> 함경남도 독판부는 경무사장과 경감이 모두 임명되었으며 독판부 직원 역시 독판, 재무사, 교통사, 장서, 참의까지 비교적 많은 부서에 담당자들이 선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활동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함경남도 일부 군 단위로는 군감 및 참사가 임명되었으나 경감의 임명에는 이르지 못하는 등 지방 경찰 조직이 확장될 여지가 있었

39) 「高警 第1313號 聯通制 改正組織의 企劃 發見 檢舉」, 1921. 2. 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40) 「高警 第1313號 聯通制 改正組織의 企劃 發見 檢舉」, 1921. 2. 7,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3』;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외무부』 16, (『북간도의 韓人에 대한 일본의 만행』).

41)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조선민족운동연감』 별책2, 60쪽.

42)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조선민족운동연감』 별책2, 84쪽.

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함경남도 지역 유력자들이 상호 연락하여 대규모로 연통제 실시를 위해 노력하던 중 일명 ‘金布事件’이라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실행되지 못한 여파로 보인다.<sup>43)</sup> 자료의 한계 상 금포사건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지만, 이후로도 함경남도 경감은 물론 각종 지방행정기관의 재건 역시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함경남도에는 利原郡 1곳에만 경무과가 설치되어 利原 경감으로 金昌烈이 임명되었다. 김창렬은 일명 金武卿이라 불리던 인물로 1920년 9월경 이원군 경감에 임명되기 이전인 7월 경 大韓獨立軍備團의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대한독립군비단은 ‘大韓獨立軍備總團約章’에 밝힌 바처럼 임시정부 국무총리의 명령으로 조직한 단체로, 임시정부 명령 계통에 의해 조직되고 활동한 단체였다. 김창렬은 당시 군비단원이 되어 이원군 내에 통신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참여하였다. 이때 서기가 되어 각 통신원들에게 이원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임시정부에 대한 지방 민심 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이를 豐山支局에 보고하는 일을 하였다. 정보를 조사하는 것 외에도 그는 군자금 납부에 관한 훈련장 및 독촉장을 이원군 자산가에게 발송하고, 군자금 모집 후원을 의뢰하는 문서를 배부하는 일을 하였다.<sup>44)</sup>

김창렬이 이원군 경감 임명에 임명된 것은 대한독립군비단 서기에 임명된 지 불과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대한독립군비단이 임시정부 명령 계통에서 조직 및 활동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임시정부 지방경찰과의 병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력한 독

43) 「內務部 呈文 제16호 : 內務部 經過狀況 報告」, 1920. 12. 20.(내무총장 이동녕 → 임시대통령 이승만).

4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5, 311쪽.

립운동 단체(또는 비밀결사)에서 단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검입하도록 하거나,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 혹은 교통사무국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sup>45)</sup> 김창렬의 임명은 이와 같은 사례일 가능성으로 보인다.

황해도는 郡 단위에까지는 경감이 임명되지 못하였고 道 경무사장으로 유일하게 김기형의 존재만 확인된다. 김기형은 임시정부 道 경찰이 되기 전부터 같은 황해도 안악군 출신인 崔明植·田承根·金泰錫·金龜가 주도한 독립선언에 참여했으며<sup>46)</sup> 이후 1920년 초부터 임시정부의 臨時軍事籌備團의 일원이 되어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한 일이 있다. 황해도 독립판부의 경무사장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이미 김구, 최명식 등과 교류한 것이다.<sup>47)</sup>

그가 어떠한 경위로 경무사장에 임명되었는지는 자료 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김구와 최명식과의 관계가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김구는 임시정부 경무국장이 되어 활동하였고, 최명식은 김구의 측근으로 1919년 7월경 연통부 설치를 위해 고향인 황해도로 파견되어 독립판부를 설치하고 직원을 임명하는 일을 수행하였다.<sup>48)</sup> 1920년 초에도 최명식은 국내로 파견되어 임시군사주비단 조직을 위해 힘썼고 그 결과 황해도 주비단이 결성될 수 있었다.<sup>49)</sup> 김기형의 주비단 활동은 이 과정에서 참여하게

45) 중국 안동현에서 운영된 임시정부의 안동교통사무국 직원은 관전현을 거점으로 한 대한청년단연합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임시정부는 비밀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관련 사람들을 섭외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에 해당 지역에서 이미 조직되어 활동 중인 소위 유력한 단체들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였다.(김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활동 연구(1919~1921)』, 단국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38~39쪽 참조)

46) 김병조,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 「第三章 日人は横暴自恣하고韓族은敵愾決心이라」.

47) 「김기형 판결문」, 고등법원 형사부, 1921. 8. 18.

48) 금허전기편찬위원회, 『안악사건과 삼일운동과 나』, 금허전기편찬위원회, 1970, 72~77쪽.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 경찰 임명 절차에 있어서 특파원의 추천이 선행되었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주비단은 국내에서 단원모집과 군수품 확보 및 모험 공작을 벌이는 데 목적을 둔 비밀결사였다. 김기형은 주비단 내 통신원 겸 분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군자금 모집만을 위한 주비단 별도대가 韓勇團으로 조직되자 단원이 되어 임시정부 공채 모집 등에 활약하였다.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주비단 단원들과 한용단 단원 50여 명이 1921년 1월 29일 사리원경찰서에 체포되면서 5월 13일 김기형도 피체되었다. 황해도 경무사장에 임명된 시기가 1921년 1월이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 김기형은 연통부 경무사와 한용단의 활동을 병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기형은 옥고를 치른 후 진남포에서 소금배를 타고 상하이로 망명하여 주로 김현구(金玄九, 또는 金鉉九)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sup>50)</sup> 윤봉길 의거 이후 그는 南京에 머물면서 한국국민당에서 활동하는 한편 일명 ‘김구파’에 속하는 인물로 보고되었다.<sup>51)</sup> 김기형이 경무사장에 임명된 것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를 중심으로 그의 인적 네트워크 및 국내특파원의 추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유일하게 중부지역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에만 경감이 임명되었다. 일명 鄭春根 이라고도 불리는 인물로 金敬模가 1921년 2월 21일 자로 괴산 경감에 임명된 사실이 있다. 김경모가 어떠한 이력과 경위로 괴산군 경감에 임명되었는지는 자료의 한계 상 밝히기 어렵다. 그렇지만 당시 충청북도의 군청 중 가장 많은 직원이 임명된 곳이 괴산군이었다<sup>52)</sup>는 사실로 미

49) 공허전기편찬위원회, 『안악사건과 삼일운동과 나』, 81쪽~86쪽.

50) 조선총독부경무국, 『國外ニ於テ疑容朝鮮人名簿』, 1934; 국회도서관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 1974;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1~3, 5~6, 31~34, 2005.

51) 「사상정세시찰보고집」 기2, 3권, 442~444쪽.

52) 청주군은 군감 1인, 괴산군 군감1, 참의원4, 경감1, 단양군 군감1, 제천군 군감1, 참

루어보았을 때, 郡의 위치나 규모와는 무관하게 임시정부와의 연계가 있는 인물이 괴산군 내 거주하거나 활동한 결과 경감의 임명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경무사장 또는 경감에 임명된 사람들은 ‘경찰’이라는 특성 때문에 임명 전후로 무장투쟁적인 색채가 강한 단체에 소속되거나 활동을 했던 인물들로 이루어져있다. 경무국장 김구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범위 안에서 임명되는 경우도 많았다. 국내에 독판부 및 각종 연락 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연통부 관할 지역 내의 유력한 독립단체와 유대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 주로 임명되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무엇보다도 경무사 및 경감들은 ‘지방 경찰’의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임시정부의 국내활동의 전면에서 활동했다는 특징이 있다.

#### IV. 맺음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제도 마련을 통해 경찰 조직을 구성하고자 했다. 그 결과 ‘중앙 경찰’로서 경무국이 설치되었다. 이윽고 임시지방연통제 시행과 함께 국내에서의 지방행정기관 설치가 본격화되었고 ‘지방 경찰’ 역시 연통부 내 警務司長·警監이라는 직명을 통해 임명되었다. 이처럼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이어 국내에 경찰 조직을 설치하고자 한 이유는 지방행정기관의 청사를 보호하고 국내 요원들을 보호하며 국내 활동에 대한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과 행정적인 장치가 본격

---

사1, 참의원1, 충주군 군감1, 참사1, 보은군 군감 1이 임명되었다.



적으로 가동되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진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연통부 내 경찰이 편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통부 경찰의 직제는 道 단위에는 독판부 내 경무사를 설치하여 산하에 기밀과 경호과를 두었고, 府 및 郡 단위에는 부서 또는 군청 내 경무과를 설치하였다. 경찰 기능은 내무부 관장 업무로, 중앙경찰인 경무국처럼 경무사, 경무과 모두 내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내무총장의 지휘를 받았다. 임시정부 연통부 경찰은 대체로 1920년 9-10월경에 집중적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경무사장과 경감이 임시정부 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직원이었기 때문에, 연통부의 구축 시점과 맞물려 임명된 결과이다.

경무사장 및 경감의 경우 관할 지역의 유력한 독립군 단체와 유대를 맺으며 임명되고 관련인들과 함께 활동을 모색해나갔다는 특징이 있다. 비교적 활발하게 경찰 조직이 구성된 함경북도는 간도 지역의 국민회와 협업을 하였다면 평안북도는 국경을 마주한 안동현에서 대한청년단연합회와 연합 전선을 취했다. 또한 임시정부가 국내 활동의 핵심 지역으로 이용한 곳에 경찰조직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1921년 말부터 1922년에 이르게 되면 연통부는 일제에 의해서 거의 파괴되기에 이른다. 내무부의 중요 업무인 ‘지방자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 인지 1919년의 ‘大韓民國臨時官制’에 담겨있는 내무총장의 역할 중 ‘지방자치’가 1926년의‘臨時政府部署組織規程’에는 삭제되었다. 광복운동자 결속, 治理조사, 교육, 생계, 노동, 사회, 교통, 경찰 및 기타 민정에 관한 사무만을 내무총장의 역할로 명시한 것이다. 실제로 1922년쯤 이르면 임시정부가 초기 구상하고 실행한 지방자치제도는 지속하기 어려웠고 지방경찰 역시 더 이상 임명되고 활동하지 못하였다.

[Abstract]

**A Review of Police Organization in the Yeontong-Bu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Early 1920s**

Kim, Eun-je

Immediately after its establishment,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ried to form a police organization by preparing a system. As a result, the Police Bureau was established in Shanghai, China, where the Provisional Government Building is located. Eventually,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Yeontong system, the establishment of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Korea began in earnest, and they were appointed under the titles of gyeongmusajang(警務司長) and gyeong-gam(警監). It can be confirmed that it was organized within the communication department system and was operated to protect the office buildings of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protect domestic personnel, an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domestic activities can be performed safely.

The police organization within the Yeontongbu department installed a police officer in the reading department at the provincial level, and had secret and security departments under it. The police function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just like the Central Police, the Police Department, the local police officers and the Police Department were all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under the direction of the Minister of Home Affairs. Provisional government provincial police officers were appointed intensively around September–October 1920. This is the result of appointing the police officer and inspector at the same time a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cation department, since they were employees belonging to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From the end of 1921 to 1922, the communication department was almost destroyed by the Japanese. The local autonomy system initially conceived and implemented by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no longer sustainable, and the local police were no longer appointed and no longer active.

However, at that time,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implemented the ordinary police system and expanded police agencies across the country based on the principle of 1 police station in 1 division, 1 district, and 1 post office in 1 town. (Communication Department) I planned to organize my organization. Although it was difficult to realize in practice, it is possible to see the efforts of the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to plan the provisional government system against the colonial rule, such as the reorganization of domestic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change of the police system through the ordinary police system.

□ Keyword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Yeontong system, Yeontong-Bu organization, gyeongmusajang(警務司長), gyeong-gam(警監), domestic activity

[참고문헌]

- 『獨立新聞』(상해), 『東亞日報』  
일본외무성사료관 소장, 『不逞團關係雜件 - 朝鮮人ノ部 - 在상해假政府』  
1~6, 『外務省記録』(국사편찬위원회 DB)  
朝鮮總督府 慶北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8·27·31·38·별책2권,  
2005~2010.  
금허전기편찬위원회, 『안악사건과 삼일운동과 나』, 금허전기편찬위원회, 197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 임시정부사』 제4권, 1971.  
우승규, 『나절로 漫筆』, 탐구당, 1978.
- 김광재,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적 의의 성립과 활동을 중심으로-」,  
『경찰청·한국근현대사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  
찰정신 정립방안』, 경찰청·한국근현대사학회, 2018(미간행 발표문)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의 인물과 노선』, 한울, 2004.  
김희곤, 『판결문에 담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 국가기록원, 2018.  
박민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통제 시행과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 수  
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上, 국가보훈처, 1999.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이명화, 『島山 安昌浩의 독립운동과 統一路線』, 경인문화사, 2002.  
황민호, 「1920년대 초 국내언론에 나타난 임시정부의 항일독립운동」, 『한  
국민족운동사연구』 6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황선익,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변천과 역사적 과제」, 『경찰학연구』  
19(2),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9.